

##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(안) 신규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고
<input type="checkbox"/>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공 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신용정보의 종류 1. 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,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(주), KCB), 공공기관, (주)카카오페이, 미국 국세청(IRS), 해외거래소(NYSE, NASDAQ, HKEX 등), 해외중개기관(Cantor, LEK 등), 해외감독당국(SEC, CFTC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(현행과 같음)  1. (현행과 같음)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,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(주), KCB), 공공기관, (주)카카오페이, 미국 국세청(IRS), 해외거래소(NYSE, NASDAQ, HKEX 등), 해외중개기관(Cantor, LEK 등), 해외감독당국(SEC, CFTC 등), <u>세무법인(조이택스)</u>	신규 제공 사항 신설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. ~ 라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</u>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변경에 따른 공개 (생략)  ▪ 신용정보 활용체제 버전 : v.2 ▪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일 : 2023년 2월 24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변경에 따른 공개 (현행과 같음)  ▪ 신용정보 활용체제 버전 : v.3 ▪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일 : 2023년 4월 28일	버전 정보 및 개정일